

제 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 2 차 본 회 의  
2023.09.15.(금) 10:0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보고 순서

①	심사대상 및 경과	2
	가. 심사대상	2
	나. 심사경과	2
②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3
	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3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3
	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3
③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	4
	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4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4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5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8
④	주요 검토사항	10
⑤	제속비 사업	11
⑥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금)  
제2차 본회의

## 1] 심사대상 및 경과

### 가. 심사대상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나.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3일, 화성시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 2023. 9. 5.(화)[1일간]
  - 기획행정위원회 외 3개 위원회 - 2023. 9. 6.(수) ~ 9. 8.(금)[3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23. 9. 11.(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3. 9. 12.)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3. 9. 13.)
    -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3. 9. 14.)
    -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계수조정 및 의결

## ㉒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 ①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재정법 제45조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 고물가·고금리·부동산 침체라는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내 집행 불가 사업 재원을 재조정하고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③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

#### 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 3조 2,695억원보다 2,321억 원이 증가한 3조 5,016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표-1. 총괄표〉

(단위: 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조 5,016	3조 2,695	2,321	7.10
일반회계	3조 873	2조 8,797	2,076	7.21
특별회계	4,143	3,898	245	6.29
공기업	3,163	3,185	△21	△0.68
기 타	979	712	266	37.43

####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 ▶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172억원 증액
  - ▶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 36억원 증액
  - ▶ 도세 징수목표액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197억원 감액
  - ▶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320억원 증액
  - ▶ 국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수입 1,743억원 증액 편성

〈표-2.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조 873	2조 8,797	2,076	7.21
지방세 수입	1조 4,759	1조 4,759	-	-
세 외 수 입	1,936	1,763	172	9.81
경상적세외수입	1,174	1,163	11	0.95
임시적세외수입	583	430	152	62.4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8	168	9	5.53
지방교부세	258	222	36	16.26
조정교부금등	2,000	2,197	△197	△8.97
보조금	9,084	8,763	320	3.66
국고보조금	6,836	6,600	236	3.58
시·도비보조금	2,247	2,163	84	3.9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35	1,091	1,743	159.73

##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 ○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 ▶ 자체사업 1,687억원, 보조사업 389억원을 증액하여 총 2,076억원 증액 편성
- ▶ (자체사업)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 등 538개 사업 2,704억원 증액, 자원화시설 운영 사업 등 1,023개 사업 1,017억원 감액 편성
- ▶ (보조사업)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등 285개 사업 1,158억원 증액,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사업 등 164개 사업 769억원 감액 편성

<표-3. 일반회계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조 873	2조 8,797	2,076	7.21
일반공공행정	2,406	1,463	943	64.49
공공질서및안전	390	350	39	11.22
교육	601	577	23	4.13
문화및관광	2,123	2,084	38	1.86
환경	2,193	2,130	62	2.93
사회복지	1조 801	1조 521	280	2.66
보건	672	669	2	0.33
농림해양수산	3,158	3,113	44	1.4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62	821	40	4.96
교통및물류	3,867	3,693	173	4.7
국토및지역개발	438	386	52	13.52
예비비	181	323	△142	△43.88
기타	3,176	2,659	516	19.43

<표-4.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성질별)>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조 873	2조 8,797	2,076	7.21
인건비	1,971	1,995	△24	△1.23
물건비	1,723	1,706	17	1.03
경상이전	1조 8,253	1조 7,927	326	1.82
자본지출	6,720	6,446	274	4.25
내부거래	1,386	393	992	250.05
예비비및기타	818	327	490	149.77

<표-5.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위원회)>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조 873	2조 8,797	2,076	7.21
의회운영위원회	73	75	△2	△3.8
기획행정위원회	5,737	4,781	956	20.0
경제환경위원회	5,175	4,952	222	4.5
교육복지위원회	1조 4,228	1조 3,554	673	5.0
도시건설위원회	5,658	5,432	226	4.2



##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 ▶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수입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함.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 ▶ 시설투자 적립금 감액 등 총 23억원을 감액 편성함.
- 기타 특별회계는
  - ▶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213억원 증액
  - ▶ 교통사업 특별회계 3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억 증액 등 총 266억원을 증액 편성함.

〈표-6.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143	3,898	245	6.29
세 외 수 입	2,468	2,270	197	8.7
경상적세외수입	1,860	1,858	2	0.12
임시적세외수입	318	124	194	156.4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9	288	1	0.42
보조금	321	342	△21	0.42
국고보조금	262	276	△14	△5.23
시·도비보조금	59	66	△6	10.1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53	1,285	68	5.34
보전수입 등	1,053	1,023	29	2.86
내부거래	300	261	39	15.07

〈표-7.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143	3,898	245	6.29
공기업특별회계	3,163	3,185	△21	△0.68
상수도사업	1,704	1,703	1	0.05
하수도공기업	1,459	1,482	△22	△1.53
기타특별회계	979	712	266	37.43
공공폐수처리시설	64	59	5	8.45
폐기물처리시설	3	2	1	52.02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6	6	0	3.13
화성함백산추모공원	337	123	213	173.62
교통사업	352	315	36	11.71
주민소득지원사업	36	36	0	0
대지보상사업	3	3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0	16	3	22.89
의료급여기금	47	43	4	9.96
도시재생	85	85	0	0.02
도시철도사업	22	21	1	6.41

〈표-8. 특별회계 세출총괄표(위원회)〉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143	3,898	245	6.29
의회운영위원회	-	-	-	-
기획행정위원회	-	-	-	-
경제환경위원회	3,295	3,306	△11	△0.3
교육복지위원회	384	166	218	131.3
도시건설위원회	463	425	38	9

## 4 주요 검토사항

### ○ 신규/증액사업 현황(10억원 이상)

-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자체사업 중 10억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6건에 330억원 증액으로 예산증액의 타당성, 집행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임.

### 〈 10억원 이상 신규/증액 사업 현황 〉

※ 국·도비 사업 및 인건비 제외

(단위:천원)

연번	실과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액
	합 계	총 12개 부서, 16건	126,785,215	93,735,731	33,049,484
1	회계과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35,680,049	33,676,721	2,003,328
2	경제정책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6,354,340	4,869,000	1,485,340
3	문화유산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건립	15,910,000	10,780,000	5,130,000
4	관광진흥과	서해안(전곡항~궁평항) 해안 데크 조성	1,500,000	0	1,500,000
5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1,536,000	0	1,536,000
6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316,403	7,165,486	3,150,917
7	도로과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	3,000,000	1,000,000	2,000,000

연번	실과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액
8	도로과	보통-수기간 도로확포장공사	3,800,000	1,500,000	2,300,000
9	도로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2,700,000	400,000	2,300,000
10	도로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2,000,000	0	2,000,000
11	건설과	소하천정비(능안천)	5,000,000	3,500,000	1,500,000
12	버스혁신과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	10,000,000	9,000,000	1,000,000
13	철도전략과	GTX A 노선(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 건설	9,115,000	5,755,000	3,360,000
14	철도전략과	서동탄역사 운영손실 보전금	1,087,882	0	1,087,882
15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 운영(소각)	11,841,541	10,289,524	1,552,017
16	자원순환과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6,944,000	5,800,000	1,144,000

## 5] 계속비 사업

-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안 p.201 참조.

## 6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4개 기금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 여유자금 예탁 등을 계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변경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3개 기금
- 이에 따라 현재 화성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16개로,
  - ▶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591억 원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 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세부내역은 붙임 심사결과 참조)

#### ○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나. 소수의견의 요지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가결안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위원은 없었음.
- 위원별 세부발언내역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hscity.net/>) 의 『회의록검색』 메뉴 열람, 참조.

붙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부. 끝.

[붙임]

2023. 09.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 수정의결**

가. 세 입 : 원안가결

나. 세 출 : 수정가결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액	감액	증액	의결액	비고
합 계	3,501,691,586	134,500	-	3,501,557,086	
일반회계	3,087,353,978	134,500	-	3,087,219,478	
특별회계	414,337,608	-	-	414,337,608	

※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삭감조서 참조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내역 : 원안의결**

가. 수 입 : 원안가결

나. 지 출 : 원안가결